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. 6. 29 선고 2021가단132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6. 29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0. 4. 2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20. 4. 21. 접수 제26302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 유지상

별지